

의안번호	2218444
의 퇴 인	김상훈 의원
회 답 일	2026. 7. 13.
추계번호	26A228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9. “<u>유동화보증</u>”이란 기술보증기금이 <u>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u>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함 - 9의2. “<u>회사채등</u>”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함 - 9의3. “<u>회사채등 유동화</u>”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u>유동화회사</u>”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u>회사채등 유동화신탁</u>”) - 9의4. “<u>유동화증권</u>”이란 유동화회사가 제9호의3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u>유동화사채</u>”라 한다)와 기금이 제9호의3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u>유동화수익증권</u>”)을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28조(기금의 업무)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1항) - 10.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u>권리의 행사</u> - 11. <u>유동화보증</u> - 12. <u>회사채등 유동화신탁</u> - 13.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u>재보증업무 및 유동화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2항)</u>	
3	안 제28조의3(유동화보증 등)	○ 기금은 <u>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음(제1항)</u> - 1. 유동화증권의 발행 -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 기금은 <u>유동화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u> ○ 기금은 <u>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음(제3항)</u> ○ 기금은 <u>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음(제4항)</u>	재량규정
4	안 제28조의5 신설(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제1항) ○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음(제5항) ○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8조(기금의 업무)	
3	안 제28조의3(유동화보증 등)	
4	안 제28조의5 신설(회사채등 유동화신탁)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기존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방식 외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자기신탁을 통한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방식을 추가하고, 기금 고유계정이 신탁계정에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현행법 제28조의3¹⁾에 따라 기금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기술보증기금출연’ 사업 중 유동화회사보증에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함

[표 1] 유동화회사보증 관련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용	2026년 제1회추경예산
기술보증기금출연 (일반회계, 1231-882)	(유동화회사보증)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유동화회사보증의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 400억원	40,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1)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 ②~④ (생략)

□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금의 자기신탁 방식을 통한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및 해당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제공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증가 및 재정수입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요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의 증가는 기금이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을 위하여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인수하고 발행기업에 인수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고, 재정수입의 증가는 투자자 등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여 기금에 매입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함
 - 이 밖에 추가적인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지출,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수수료, 운영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으로 기초자산(회사채) 이자 수입 등이 있음
- 참고로, 2025년 10월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자기신탁 방식의 유동화증권을 직접발행하고 신용보증기금 고유계정이 신탁계정에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다음과 같음

[표 2]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관련 수입 및 지출 계획액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예산과목	내용	금액	세부사업	내용	금액
[84-843]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유동화수익증권 매각	750,000	[2431-320]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기초자산(회사채등) 매입	750,000
				유동화증권 이자비용	5,969
[54-546] 기타재산이자 수입	유동화 기초자산 (회사채등) 이자	7,974	[2434-301] 신보IT운영 (정보화)	운영비	2,045
				유동화증권 직접발 행 시스템 구축	394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증권의 직접발행 규모 등을 추정하여나 하나,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금의 자기신탁 방식을 통한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규모는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및 투자자의 유동화증권 인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제도 운영비용은 사전 준비절차를 통해 그 범위와 규모가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손희정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손희정	02-6788-3750	hjson87@assembly.go.kr